



가 정 통 신 문

Homepage: <http://ksjeil.ms.kr>

교 장 실: (063)440-3100

1학년교무실: (063)440-3111~16

2학년교무실: (063)440-3121~26

3학년교무실: (063)440-3131~36

【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는 “나를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며 함께 꿈꾸는 행복한 학교” 라는 교육 목표의 실현을 위해 전교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앞으로도 더욱 서로 존중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라 규정하고 있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제2조)

1) 형법상 상해·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1) 폭행, 상해(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폭행)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상해)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경우

· 큰소리로 폭언을 하여 피해교원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우울병 등으로 6주간 치료를 요하게 한 경우

(2) 협박(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①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공포심을 일으키도록 해를 끼칠 것을 말하는 행위

예) 교원에게 ‘교직을 그만두게 만든다,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는 경우

· 허위 사실 유포, 속임수, 위력으로 선생님의 지도를 방해하는 행위 (업무방해)

예) 위험한 물건을 교원의 목에 겨누거나 찌를 것처럼 한 경우

2) 성폭력범죄 행위, 교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음란한 농담, 신체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유하는 경우
- 칠판, 책, 벽, 책상 등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쓰는 경우
- 교사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3) 불법정보유통행위 (전화,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 SNS 등을 활용한 침해 행위)

: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선생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만들거나 인터넷 게시판, 채팅방, SNS에 올리는 경우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폭행, 학대하고, 이를 따지는 학부모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 는 허위사실을 해당 교사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게시한 경우
- 담임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새벽시간을 포함한 수 일 동안 ” 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교사의) 자손들이 장래 불행할 것이다” 라는 등의 저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 십여 차례 보내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4)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

- 폭행, 협박, 속임수 등으로 선생님의 지도를 방해하는 행위 (공무집행방해)
 - 허위 사실 유포, 속임수, 위력으로 선생님의 지도를 방해하는 행위 (업무방해)
- 예)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수업이나 지도를 방해하고 결석 처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3.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조치(「교원지위법」 제17조 제1항, 교권보호위원회)

- 1) 학교내에서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학내외전문가예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4) 출석정지
- 5) 학급교체
- 6) 전학

* 조치 결정 시 세부기준

-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침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가능성, 피해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피해 교원의 임신·장애 여부와 정도, 침해학생의 장애 여부와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2020. 9. 10.

군 산 제 일 중 학 교 장

“직인생략”